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65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백선희·서왕진·김재원

신장식 · 정춘생 · 강경숙

박은정 • 김준형 • 허 영

차규근 • 한창민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

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자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재직 중의"를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로, "급여는"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형이 확정된 때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며 형이 확정된 후의 급여는"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한다"로 한다.

제8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5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환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공무원연금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재직 중의</u> 사유로 「형법」	④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	
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u>급여는</u> 지급하지 <u>아니한다</u> .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형이
	확정된 때까지 지급한 급여 총
	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
	며 형이 확정된 후의 급여는
	아니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귀
	<u>속한다</u> .
제88조(시효) ① · ② (생 략)	제88조(시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	3
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	

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서 신설>

④ · ⑤ (생 략)

<u>다만, 제65조제4항에 따른</u>
공단의 환수 권리에 대한 소멸
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 ⑤ (현해과 간음)